

GLOBAL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미국

미국 지방정부 공공계약 지원 프로그램

일본

일본의 '지역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구축을 위한 노력

미국

미국의 커뮤니티 커넥터 프로그램(Community Connectors Program)

한국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선 방향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선 방향

광역지자체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배경

- ▶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및 관련 기술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학적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정책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이원도, 2023)
 - 빅데이터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 및 수요자 기반 맞춤형 서비스 발굴과 같은 18개 우수사례를 선정·배포하였음(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2021.12.23.)
- ▶ 데이터기반 행정은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일환으로써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 수립과 행정혁신 달성을 지향함(이재용 외, 2021)
 - 문재인 정부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1년 2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문제해결을 제안하였음
 - 윤석열 정부는 AI와 같은 첨단기술에 더하여 민간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 및 양방향 소통강화를 강조하였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는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개별적인 플랫폼을 운영 중임
 - 디지털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협력·소통 공간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임(이경은 외, 2022)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현황

- ▶ 기존의 광역지자체 공공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활용을 촉진하고, 수집된 광역 단위 공공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위한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운영함

- 이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행안부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2021)에 의해, 광역지자체 공공데이터 플랫폼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정비되거나 통폐합됨
 - 이후 재정 여건과 데이터기반 행정 실현을 위한 개별전략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새롭게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거나¹⁾ 기존 공공데이터포털을 갱신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물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구축되어,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집중된 공공데이터포털과는 차별성을 지님
- 실시간 데이터 공개, 특화된 데이터(예: 영상, 이미지) 제공, API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빅데이터 공유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이와 함께 사용자가 직접 연계 데이터를 선택하고 다양하게 시각화된 분석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석 및 서비스 모듈이 탑재되어 있음
 - 또한, 일부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와 서비스 기능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빅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곳도 존재함
- ▶ 특히, 일부 광역지자체는 빅데이터 교육이나 활용 전담 기관(예: 서울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음
- 현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역 내 혁신기관(대학 및 스타트업)에 데이터 공급기능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 거래소(마트)를 통한 공공기관(내부) 및 민간기관(외부) 플랫폼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포괄적 역할수행을 기대함

표 1.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현황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명	빅데이터 센터명 (혹은 캠퍼스)	개방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	빅데이터 캠퍼스	2011-12-18
부산	빅데이터 플랫폼 https://bigdata.busan.go.kr		2020-02-01
대구	D-데이터허브 https://data.daegu.go.kr	빅데이터활용센터	2019-08-20
인천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플랫폼 https://bigdata.startuppark.kr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센터	2020-01-16
광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https://bigdata.gwangju.go.kr		2021-09-13
대전	빅데이터포털 http://bigdata.daejeon.go.kr		2021-05-31
울산	빅데이터활용플랫폼 http://data.uri.re.kr	빅데이터센터	2022-08-01

1) 일부 광역지자체는 행안부의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사업(2020년)을 지원받아 구축되었음

표 1. (계속)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명	빅데이터 센터명 (혹은 캠퍼스)	개방일*
경기	데이터 분석포털 https://insight.gg.go.kr	분석센터	2015-08-28
강원	LOOK https://gangwon.ai		2023-04-06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https://data.chungbuk.go.kr		2021-12-09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https://alldam.chungnam.go.kr		2022-08-29
전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https://www.bigdatahub.go.kr		2019-08-30
전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https://data.jeonnam.go.kr		2021-11-05
경북	빅데이터포털 https://www.gbdata.kr		2022-05-27
경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https://bigdata.gyeongnam.go.kr	빅데이터센터	2020-08-18
제주	데이터 허브 https://www.jejudatahub.net	빅데이터센터	2021-01-18

*일부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첫 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개방일과는 다를 수 있음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의 한계점

- ▶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지향하며,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이자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도구로써 주목받고 있음
- ▶ (로드맵 부재) 하지만 일부 광역지자체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능에 공간정보(GIS)를 연계한 시각화 서비스 기능만이 추가된 형태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명확한 운영목적 이행안 마련 및 차별화된 서비스 기능 발굴이 필요함
- ▶ (표준화 및 품질관리) 또한 제공되는 일부 빅데이터에서는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신뢰성 확보 및 품질평가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 특히 빅데이터 수집과 처리방법에 대한 표준화 체계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검색 및 탐색을 위해 갱신주기와 같은 추가 정보가 포함된 메타데이터(metadata)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 (의견수렴 부재) 집중발굴 및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중장기 이행안에 따라 지역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 ▶ 향후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수요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와 데이터 수집 및 개방 전 품질점검을 통한 내실화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이행안 마련이 필요함
- ▶ 또한 사용자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저작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
 - 현재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조(목적)와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모든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고 있음
 - 하지만,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별 활용범위 및 기준이 상이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 그리고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에 대한 표기가 필요함

참고자료

- 1) 이경은, 박재희, 유란희. (2022).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platform government)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 이원도. (202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발전방향. 월간 국토 5월호.
- 3) 이재용, 고경훈, 김정숙. (2021).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4) 행정안전부. (2021).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
- 5) 행정안전부. (2018).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추진: 통합데이터 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간 허브기능 수행. 1월 17일. 보도자료.
-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 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08.05.)」
- 9) 「저작권법 (시행 2022.12.08.)」
- 10)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소개. <https://www.kogil.or.kr/info/license.do>.

이원도 부연구위원

wondo.lee@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